

무배당 유니버설달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유니버설달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

1. 보험종목의 명칭

- 해약환급금보증형
- 해약환급금미보증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보증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67	만15	70
보증형	종신	종신	7	년	만15	65	만15	69
보증형	종신	종신	10	년	만15	63	만15	67
보증형	종신	종신	15	년	만15	60	만15	64
보증형	종신	종신	20	년	만15	56	만15	60
보증형	종신	종신	25	년	만15	53	만15	55
보증형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보증형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보증형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보증형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보증형	종신	종신	70	세	22	65	23	65
보증형	종신	종신	80	세	21	51	23	62
미보증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67	만15	70
미보증형	종신	종신	7	년	만15	65	만15	69
미보증형	종신	종신	10	년	만15	63	만15	67
미보증형	종신	종신	15	년	만15	60	만15	64
미보증형	종신	종신	20	년	만15	56	만15	60
미보증형	종신	종신	25	년	만15	53	만15	55
미보증형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미보증형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미보증형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미보증형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미보증형	종신	종신	70	세	22	65	23	65
미보증형	종신	종신	80	세	21	51	23	62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별도의 의무가입 내용이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하지 않음

5. 기준통화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에 사용되는 통화는 미(美)합중국통화로 하며, 그 단위는 “달러” 로 표기함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하다.

- 해약환급금미보증형: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기본보험료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이 가능하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1)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① ~ ③에서 정하는 한도는 동시에 적용된다.

①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②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아래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의 100%와 연간 납입한 총 기본보험료의 100% 중 큰 금액

③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의 1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 ④ ①, ②, ③의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33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른 (추가)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가)중도인출금액 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 ⑤ 기본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할인 전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 (2) (1)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미(美)국고채 수익률이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미(美)국고채수익률은 미(美)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공시하는 10년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한다.
- (3) 보험료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의 한도를 적용한다.
- (4)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및 제6항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동일 비율로 변경하므로 이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도 변경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최대 12개월 분(당월분 포함)까지 선납 가능]
- 나. '가'의 경우 선납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체하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부분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한다.
-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8.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후에 부활(효력회복)한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한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6.나.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하는 납입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납입기간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시점의 월계약 해당일	5년 이상 7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10%
	7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12%
	10년 이상 15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15%
	15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20%
	20년 이상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25%

- 나.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액과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15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중도인출 금액은 고려하지 않으며,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함)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본다.
- 다. “가” 에도 불구하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 등으로 월대체보험료 총당이 가능한 때 가산한다.
- 라.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의 약관 제45조(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자동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한다.

9.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 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10만달러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주계약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가입가능한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9만9천달러 이하	0.0%
10만달러 이상 ~ 29만8천달러 이하	0.5%
30만달러 이상	1.0%

- * 특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위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보험기간 중 해당되는 고액계약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을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한다.

-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으로 인하여, 높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가, 그 보다 낮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가입금액 구간의 가입을 제한한다.

예)

(가) 보험가입금액 29만 9천달러 : 할인 후 보험료 \$100

(나) 보험가입금액 30만 달러 : 할인 후 보험료 \$99

(나)의 할인 후 보험료가 (가)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기 때문에, (가)의 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제한함.

10.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한다.

11.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2.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 기준에 따라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중도인출 용어의 정의

- (1) (기본)중도인출 : (기본)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것을 (기본)중도인출이라 한다.
- (2) (추가)중도인출 :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것을 (추가)중도인출이라 한다.

2. 인출 가능 시기 :

- (1) (기본)중도인출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부터 가능하다.

(2) (추가)중도인출: 계약일 이후 (추가)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3. 인출 횟수 제한 :

(1) (기본)중도인출 :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인출 가능하다.

(2) (추가)중도인출 :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다.

4. 1회 최소 인출 단위 :

(1) (기본)중도인출 : 100달러 이상, 10달러 단위로 인출 가능하다.

(2) (추가)중도인출 : 10달러 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추가)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최소 단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5. 1회 최대 인출 금액 :

(1) (기본)중도인출 :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기본)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2) (추가)중도인출 : (추가)해약환급금의 90%이다. 다만, (추가)계약자적립액이 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인출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인출 후 적립액 및 제약조건 :

(1) (기본)중도인출 :

[해약환급금보증형]

인출 후 (기본)예정계약자적립액은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인출시점까지 총 (기본)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은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인출시점까지 총 (기본)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추가)중도인출 : 별도의 제약조건이 없다.

7. 기타 :

(추가)중도인출 :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의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따라 원

회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하여 보험료 납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출수수료가 없으며 인출 최소 단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3.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외화보험을 기준으로 산출 및 적용한다.

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공시이율은 변경될 수 있다.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해당 월의 공시이율로 계산된다. 회사는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①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②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③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④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⑦ 다만, ④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⑤ 내지 ⑥의 자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공시기준이율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를 100%로 하여 산출한다.

(2)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① 객관적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미국채(30년) 수익률 × 미국채 가중치(β 1)
+ 미회사채(무보증 10년, A) 수익률 × 미회사채 가중치(β 2)
+ 미국채(1년) 수익률 × 미국채(1년) 가중치(β 3)
+ 미국채(3개월) 수익률 × 미국채(3개월) 가중치(β 4)

- ②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미국채(30년), 미회사채(무보증 10년, A) 및 미국채(1년) 수익률과 미국채(3개월)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직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④ 미국채 가중치(β 1), 미회사채 가중치(β 2), 미국채(1년) 가중치(β 3), 미국채(3개월)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직전년도 평균 잔고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각 가중치는 25%로 할 수 있다.

$$\text{미국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미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미국채(1년)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미국채(3개월)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미국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단, 미국채(1년), 미국채(3개월) 제외

- b는 회사가 보유한 미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c는 회사가 보유한 미국채(1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d는 회사가 보유한 미국채(3개월)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②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ext{투자지출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③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4)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라. '다'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다'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를 적용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관련 회사내부지침을 따른다.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생활자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바.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의 경우, 약관 제45조(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15.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관 제3조의2(용어의 정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이 때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0달러이며, 기본보험료가 100달러 미만일 경우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100%로 한다. (Cent(1달러의 100분의 1) 단위)
- 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6.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보증형의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월대체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한다.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자적립액 비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위의 항목 중에서 ㉡ 및 ㉢ 중 계약자적립액 비례 보증비용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 중 계약자적립액 비례 보증비용은 계약일 이후 최초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 ㉣ 중 보험료 비례 보증비용, ㉣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중 보험료비례 보증비용, ㉣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 ㉤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 월대체공제액은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한다.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자적립액 비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특약은 제외)

㉥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할 때 공제한다.

㉔ ㉓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보다 낮게 납입하는 등의 사유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만,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다.

나. 해약환급금미보증형의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월대체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㉔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한다.

㉑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㉒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

㉓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㉔ 위의 항목 중에서 ㉑ 및 ㉒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 ㉒은 계약일 이후 최초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㉑, ㉓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㉓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㉔ ㉓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 월대체공제액은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㉔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한다.

㉑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㉒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

㉓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㉔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특약은 제외)

㉔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할 때 공제한다.

㉔ ㉓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보다 늦게 납입하는 등의 사유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다.

1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한다.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는다.

- ①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 ②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 ③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공제액 충당이 가능한 경우

다. '가'~'나'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라. 다만, 해약환급금미보증형 계약의 경우 '가'~'다'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당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또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마. '라'에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는 특약은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된다.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 (1)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 (2)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대상 적립보험료는 영업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한다.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일 직후의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공제액의 계산 및 차감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 및 '나'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나.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다.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21.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에 한하여,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자금을 선지급한다.

가.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계약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자금 선지급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생활자금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1)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유효한 계약
- (2) (기본)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계약
- (3)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모두 납입완료한 계약
- (4)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부 경과한 이후 5년이 지난 계약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함)이면서, 생활자금 개시일 당일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및 100세 이내인 계약

나. 주요 내용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생활자금 개시나이와 생활자금 지급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 (2)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한 생활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25년으로 한다.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이 중지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경우,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해당 선지급 중지 시점까지로 하고 이후 생활자금은 선지급되지 않는다.

(3)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① 최초 생활자금을 선지급하기 직전 보험가입금액에 계약 체결 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에 따른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 (a)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5년일 경우 : 18.0%
 - (b)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0년일 경우 : 9.0%
 - (c)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5년일 경우 : 6.0%

(d)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0년일 경우 : 4.5%

(e)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5년일 경우 : 3.6%

(4) 생활자금 선지급시 생활자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해약환급금을 말한다. 다만, 이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최저해약환급금으로 최저보증한다.

다. 생활자금 선지급 방법

(1)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만큼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자동감액하며,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해약환급금을 생활자금 지급일에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2) 생활자금 지급일은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연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며, 이하 “연계약해당일”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을 나누어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4)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라. 생활자금 선지급 후의 운용 방법

(1)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감액된다.

(2)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생활자금 개시나이” 세 연계약해당일 전 12개월 이내에 생활자금 선지급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 선지급을 취소한다. 또한,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이 취소된 이후에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언제든지 생활자금 선지급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 선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4)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약정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 선지급은 중지되며,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선지급이 중지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또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5) 최초 생활자금 지급일 이후부터 마지막 생활자금 지급일까지 (기본)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및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22. 기타

가. 부가 가능한 특약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을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른다.
-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하다.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④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2)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은 주계약에 부가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기타 회사에서 인정하는 특약

(4) 「무배당 종신전환 특약」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을 「무배당 종신전환 특약」을 통해 달러보험이 아닌 원화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른다.
- ② 「무배당 종신전환 특약」은 전환시점의 보험나이 및 기초율을 적용한다.
- ③ 「무배당 종신전환 특약」을 통한 원화보험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하다.
 -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
 - 전환 전 계약을 전부 해지한 경우

(5)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을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을 통해 저축보험으로 전

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 ③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으로의 전환은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한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의 주계약 (기본)해약환급금의 90%와 (추가)해약환급금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전체 주계약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저축전환의 가입금액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기본보험금액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을 기본보험금액으로 한다. 단,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기본보험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의 101%」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101%」은 예정계약자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2) (1)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한 「6.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한다. 다만, 「12.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른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본)중도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기본)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frac{\text{(기본)중도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기본)중도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	--------------------------------	---	---

(추가)중도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frac{\text{(추가)중도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text{(추가)중도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	---	----------------------------------	---	---

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취급하지 않는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바.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상품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수준을 동일한 보장 내용의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상품과 비교하여 안내한다.

-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아.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 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